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6(목) 10:00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4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

2. 제안이유

2021. 4월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이 준공 예정에 있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1) 시설현황 : 공연장, 자치활동실, 북카페, 스튜디오, 운영사무실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종사자 수	비 고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	독산동 1005-7번지	연면적 336.62㎡ (지하1층~지상1층)	5명	21. 4월 준공 21. 7월 개관

나. 주요 위탁내용

1)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위탁내용 :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전반

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자치활동 지원 등

나) 관내 학교, 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및 법인 등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및 연계 활동에 관한 사업

- 다) 기타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4) 운영비 : 연 331백만원(구비) ※ 2021년 : 281백만원 (21.7월 개관)

4. 관계법령

-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4조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5. 검토의견

○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의 추진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진흥과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 시설 개요 및 사무위탁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1년 4월 준공 후 롯데알미늄으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336.62㎡으로 대상부지는 금천구 독산동 1005-7번지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자리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구비 연 3억3천1백만원임.

○ 검토 의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기관과 위탁 체결 전 위탁 시설의 규모가 다소 협소하다는 단점에 따른 사업 방향 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25개 자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표

구 분	현 황	자치구	비 고
없 음 (9개)	-	광진, 동대문, 강북, 금천	시립 청소년센터만 있음
	대체운영	중구, 관악, 강서, 서초, 강남	문화의 집은 없지만 <u>구립 청소년 수련관, 문화 회관 운영</u>
운영중 (16)	1개 운영 (8)	용산, 성동, 양천, 영등포, 송파, 종로, 중랑, 강동	건립 중인 자치구 포함(최종)
	2개 운영 (4)	성북, 은평, 서대문, 구로	
	3개 운영 (4)	도봉, 노원, 마포, 동작	
건립 중	9개	성북 2nd, 도봉 3rd, 노원 3rd, 서대문 2nd, 구로 2nd, 동작 3rd, 종로 1st, 중랑 1st, 강동 1st	
기타 복합시설 건립		관악구 청소년 종합시설, 송파 구립 청소년 미래 센터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다목)

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